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90
------	------

2021. 11. 24.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1. 11. 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정책실장 황보연)

#### 1. 제안이유

- 일자리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민·관 협력 체계구축을 통한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 중인 일자리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일자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안 제9조의2).

##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일자리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일자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2년 연장하기 위해 제출되었음.

### 나. 일자리위원회 개요 및 운영 경과

- 일자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이하 “일자리 조례”)에 근거해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일자리 창출과 취업·보조금 지원사업,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 대책,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 등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위원회는 ▶서울시의원, ▶서울시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경제·노동계·사회단체 등 사회각계 대표, ▶전문가 등을 포함해 30명 내외로 구성·운영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 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sup>1)</sup>에 따르면, 자문기관이나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관련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함.
- 이에 2015년 일자리조례 제정 시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면서 존속기한을 2년으로 하였음.
- 이후 일자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17년 8월 11일부로 만료되었음에도 기한연장을 위한 조례개정 없이 운영해오다 시의회에 지적받은 후에야 조례를 개정한 바 있음(2019.9.26.).

### <일자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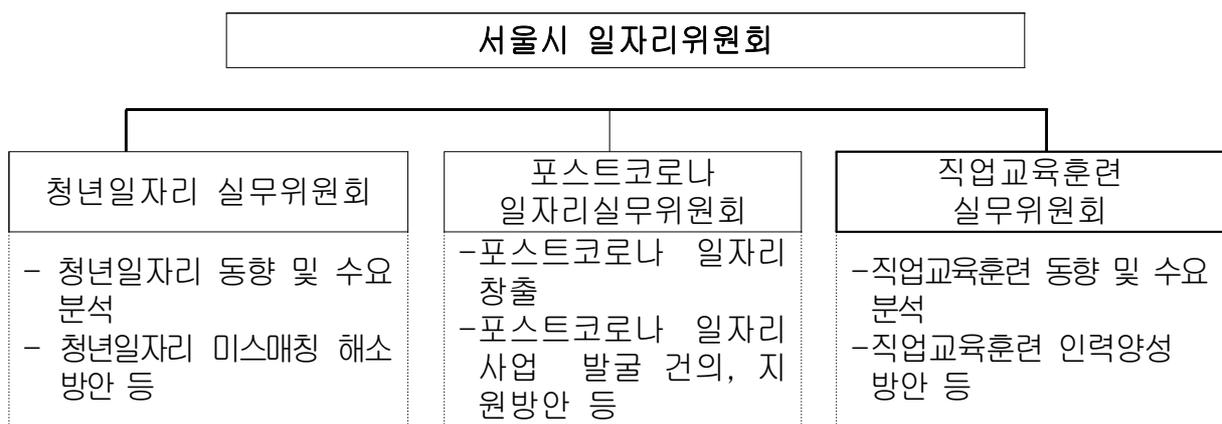
○ 2015.	일자리 기본 조례 제정 및 일자리위원회 신설 -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 추진('15.6월)
○ 2015. 8월	제1기 서울시 일자리위원회/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임기 : 30명(실무7명), 2015.8.12.~2017.8.11.(2년)
○ 2017. 8월	일자리위원회 존속기한 만료(부칙 제2조)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개정 없었음.
○ 2017. 8월	제2기 서울시 일자리위원회/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임기 : 33명(실무20명), 2017.8.12.~2019.8.11.(2년)
○ 2019. 9월	일자리위원회 존속기한에 관한 조항신설 - 임종국의원 발의(제9조의2)
○ 2019.10월	제3기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임기 : 32명, 2017.8.12.~2019.8.11.(2년) 제3기 서울시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임기 : 15명, 2020.10.6.~2021.8.11.(10개월)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다. 일자리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필요성 여부(안 제9조의2)

- 일자리위원회는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와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음(조례 제9조).
- 그런데 최근 3년간 일자리위원회 개최건수가 3회에 그쳤으며, 회의 안건 역시 정책논의가 아닌 서면을 통한 사업추진 현황보고였던 것으로 드러나 위원회의 전문성을 십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회 또한 서울시 일자리 정책 개발과 평가,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실질적인 역할수행과 운영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남.

### <서울시 일자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조도>



※ 실무위원회는 2년 마다 새로운 분야로 구성되며, '3기 실무위원회(2020.10~2021.8.)'에서는 청년일자리/ 포스트코로나/ 직업교육훈련 분야로 위원회가 구성됨.

- 2019년 2기 실무위원회는 종료 후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차기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년(2019~2020년)간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음.

**<일자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실적(최근 3년)>**

연도	회의개최일시		회의 안건
2019	일자리위원회	미개최	-
	실무위원회	미개최	-
2020	일자리위원회	'20.4.3. (서면)	2020년 서울시 일자리정책 추진현황 보고
		'20.12.10 (서면)	2020년 서울시 일자리정책 추진현황 및 2021년 계획 보고
	실무위원회	미개최	-
2021	일자리위원회	'21.3.30. (서면)	2021년 서울시 일자리정책 실행계획 보고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및 전략 등 자문
	실무위원회	'21.3.25. (대면)	기업·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인재양성 방안
		'21.3.30. (대면)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및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방안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4차산업혁명으로의 전환은 심각한 실업 문제와 함께 산업·노동구조의 대대적인 변화를 촉발하고 있음.
- 이에 서울시는 올해 2조 3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일자리 예산을 편성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음.
- 서울시민의 피부에 닿는 일자리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일자리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논의과정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의 필요성은 인정됨.

- 그러나, 일자리위원회 설치(2015년) 후 지금까지 존속기한 법적근거 미비, 회의개최 부진 등 부실한 위원회 운영·관리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보완책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위원회 활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90
----------	------

제출년월일 : 2021년 10월 1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일자리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민·관 협력 체계구축을 통한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 중인 일자리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일자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안 제9조의2).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1. 7. 8.~7. 28.)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u>2021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 ----- <u>2023년 12월 31일</u>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일자리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사항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박지혜(02-2133-5351)